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츠비시 상사,
국제카르텔사건으로
1억 3,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음**

미국 법무부는 미츠비시 상사의 흑연전극에 대한 국제카르텔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고, 1억 3,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벌금액은 흑연전극과 관련된 사건에서 부과된 두 번째의 고액으로, 이제까지 반트러스트사건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액 중에서 4번째로 고액인 것이다.

일본 동경에 소재하는 미츠비시 상사는 2001년 2월 12일, 미국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서의 2주간에 걸친 재판에서 1992년 3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세계 주요 흑연전극 제조업자가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가격을 구속하는 공모를 조력하고 교사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과 미츠비시 상사는 2001년 4월 19일, 유죄판결

의 결과로서 미츠비시에 대해 1억 3,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화해안에 동의하였다. 화해안은 금일, 필라델피아 지방법원 Marvin Katz 재판관에 의해 승인되고 받아들여졌다.

미츠비시 상사는 1991년 2월부터 1995년 1월까지 흑연전극의 세계 최대 생산자인 UCAR International Inc.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츠비시 상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흑연전극의 카르텔을 성립시키고 실행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되어 있다.

- UCAR사가 경쟁업자와 회합을 갖고 흑연전극의 가격 인상, 유지 및 고정할 것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유도, 권장하였다.
 - UCAR사와 Showa Denko, Tokai, SEC, Nippon을 포함, 경쟁업자간에 공모의 회합 및 의사소통의 원활을 계획하고 협조를 제공하였다.
 - Showa Denko, Tokai, SEC을 대신하여 공모에 의한 결정에 따라 인상된 가격으로 흑연전극을 판매하였다.
 - 공모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공모의 존재를 고객 및 기타의 자들에게 숨겨왔다.
- 미츠비시 상사는 수 개의 공모사들

대신 구속된 가격으로 흑연을 판매한 사업자로서, 그리고 UCAR사의 50% 주주로서 본 건 카르텔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미츠비시 상사에 대한 소추 및 1억 3,400만 달러의 벌금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는 국제카르텔에 참가 또는 의도적으로 조력하는 자에게 강력한 억제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John M.Nannes 반트러스트국장대행은 말했다.

흑연전극의 국제카르텔 구성원들에 대한 이제까지의 소추로 현재까지 3억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흑연전극의 최대 공급업자 6개사는 유죄판결을 받고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 받았다.

- 독일의 Wiesbaden에 소재하는 SGL Carbon AG(1억 3,500만 달러)
- 켄벡티컷주 Danbury에 소재하는 UCAR International Inc(1억 1,000만 달러)
- 남캐롤라이나주 Ridgeville에 소재하는 Showa Denko Carbon Inc(3,250만 달러)
- 일본 Tokyo에 소재하는 Tokai Carbon Co. Ltd(600만 달러)
- 일본 Hyogo에 소재하는 SEC Corporation(480만 달러)

· 일본 Tokyo에 소재하는 Nippon Carbon Co. Ltd(250만 달러)

피츠버그에 소재하는 Carbide Graphite Group은 조사에 협력, 동사와 동사의 임원은 면책 받았다.

또한 3명의 개인이 카르텔의 공모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Robert P. Krass(UCAR사의 전 최고경영책임자)(17개월의 금고형, 벌금 125만 달러)

· Robert J. Hart(UCAR사의 전 최고집행책임자)(9개월의 금고형, 벌금 100만 달러)

· Robert J. Koehler(SGL Carbon AG의 최고경영책임자)(벌금 1,000만 달러)

흑연전극은 소규모인 제련소의 전기 arc식 용광로에 쓰여지는 거대한 탄소수이다. 이 제련방법은 미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발전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제조된 강철의 50%가 이 방법에 의한 것이다. 흑연전극은 파편조각의 용해와 철강의 정제에 필요한 고열을 발생시킨다. 미국에서의 흑연전극의 총 매출액은 공모기간 중 17억 달러 이상이었다.

미츠비시 상사의 유죄판결은 반트러스트국 필라델피아 지방사무소 및 필라델피아 연방수사국에 의해 행해진 조사의 결과였다.

2001. 5. 10.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

법무부, GE와 Honeywell간의 합병에 대해 사업분할을 요구 헬리콥터 엔진부문의 분리 및 엔진과 보조동력장치(APU)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공급자를 인정할 것을 요구

미국 법무부는 금일, General Electric Company(GE)와 Honeywell International Inc(Honeywell)가 420억 달러의 합병계획에 대한 법무부의 반트러스트상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제안된 합병은 미국에 있어서 군용헬리콥터 엔진과 특정 Honeywell제 항공기 및 보조동력장치(APU)를 위한 대량의 정비, 수리, 점검(maintenance, repair, overhaul : MRO)서비스의 공급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Honeywell의 헬리콥터 엔진부문의 매각 및 Honeywell제 항공기엔진 및 APU의 특정 모델에 대하여 새로운 제3의 MRO서비스 공급업자를 인정할 것을 양 사에 요구하고 있다. Honeywell 헬리콥터 엔진부문의 2000년에 약 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군부는 고가격, 저품질에 직면하고, 선진국인 미국 군용 헬리콥터 엔진의 차세대 디자인, 발전 및 제조에 있어서 혁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업무용 항공기 사용자는 Honeywell의 항공기 엔진 및 APU의 수리, 점검에 따른 가격의 상승 및 질의 저하라는 불이익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Honeywell의 헬리콥터 엔진부문의 매각 및 새롭게 인정된 MRO 서비스 공급업자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발하게 지속될 것을 보증할 것이다.」라고 Constance K. Robinson 반트러스트국 관리·합병심사담당부장은 말했다.

법무부에 의한 합병계획의 최종 승인은 합병기업이 수락할 수 있는 동의판결의 교섭과 컬럼비아주 지방법원에 의한 동 판결의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GE와 Honeywell은 미국의 군용 헬리콥터 엔진사업 부문에서 1, 2위 제조업자로서, 2개사가 합하면 현재 미국 군용헬리콥터 엔진사업의 대부분을 점유하게 된다. GE와 Honeywell은 또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연구개발자금을 공동터빈고도가스발생장치(Joint Turbine Advanced Gas Generator : JTAGG)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국방부로부터 받고 있다. 1988년에 시작한 JTAGG계획은 헬리콥터 엔진의 연료소비율의 효율성 향상 및 하중배분비율의 진전을 위한 기술개발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50억 달러를 들여 20년간 차세대 헬리콥터 엔진의 발전을 위한 공동엔진프로그램을 늦어도 2004년까지는 시작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본 건 조사 기간 중 국방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작업을 행하였다. GE와 Honeywell은 Honeywell이 제조하는 TFE731 터보팬엔진 및 관련 APU의 보수점검을 하도록 인가 받은 3사 중의 2개사이다. Honeywell의 TFE731 터보팬엔진은 소형부터 중형의 비즈니스용 제트기에 사용되고

있다. APU는 항공기가 지상에 있는 동안 항공기의 전자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작은 엔진이다.

켄벡터컷주 페어필드를 거점으로 하는 GE는 항공기 엔진, 가정용 전기제품, 조명, 발전, 산업관리, 의료용 확장장치, 플라스틱 공학기술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다각적인 제조·서비스회사이다. GE는 2000년의 수익을 대략 1,300억 달러로 보고하였다.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 본부를 둔 Honeywell은 항공전자공학제품·서비스, 주택, 건축물, 산업관리, 자동차제품, 발전시스템, 특수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및 고도전자물질 등을 제조하는 다각적인 기술·제조회사이다. Honeywell은 2000년의 총 매출액을 대략 250억 달러로 보고하였다.

2001. 5. 2.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

**소더비스와 크리스티스
경매하우스의 전 회장,
국제적 카르텔 공모로
피소**

미국 법무부는 맨하탄 연방대법원이 금일, Sotheby's Holdings와 Christie's International(세계 2대 옥션 하우스)의 전 회장이 경매에서 미술품, 보석 및 가구의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에 대하여 카르텔을 하여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A. Taubman (1983~2000년 소더비 이사회장) 및

Anthony J. Tennant(1993~1998년 크리스티스의 이사회 멤버, 1993~1996년 동 사 이사회장)는 1993년부터 1999년에 걸쳐 서면법에 위반하여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시비하는 공모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Taubman은 미국 국민이며, Tennant는 영국 국민이다.

6년간의 국제적 카르텔로 소더비스와 크리스티스는 미국의 판매자에게 수수료로 적어도 4억 달러를 부과하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양 사는 세계 미술품, 보석 및 가구 경매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양 사는 판매자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금까지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상호 신고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가격면에서 경쟁을 행하였었다. 공모 결과, 판매자는 주된 교섭수단을 잃었다.

「본 건은 피고가 가격카르텔의 예술에 속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트러스트국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든 가격카르텔을 정력적으로 소추할 것이다」라고 반트러스트 형사집행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James M·Griffin 차장은 말했다.

Taubman과 Tennant은 다음의 죄로 기소되었다.

-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미국 또는 다른 지역에서 회합·회담을 했다.
-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에 동의하였다.
- 판매자에 대한 교섭의 여지없이 수수료율 계획을 공표 할 것에 동의하였다.

- 판매자에 대한 교섭의 여지없이 수수료율 계획을 양 사가 공표 할 순서에 합의하였다.
- 약속한 합의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율 계획을 발효하였다.
- 판매자에 대한 교섭의 여지없이 수수료율 계획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교환하였다.
-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에 관한 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2000년 10월 소더비스 및 동사의 전 CEO인 Diana D. Brooks는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쟁수수료율을 구속한 것으로 별개 유죄의 답변을 하였다. 소더비스사는 4,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이 선고되었고, Brooks는 판결을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반트러스트국의 법인에 대한 감면프로그램(Leniency Program)에 근거하여 조사에 협력한 Christie's의 발표를 사전에 승인하였다. Leniency Program에 따라 자발적으로 범죄에 관여한 사실을 보고하고, 기타 특정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형사소추로부터 보호될 자격을 얻는다.

Taubman과 Tennant는 개인에 대해 최고 3년의 금고형 및 최대 35만 달러의 벌금을 함께 규정한 서면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다. 벌금의 최고액은 범죄에 의해 얻은 이익의 2배액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2배액이 법률에서 정해진 벌금의 최고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 액까지 인상된다.

2001. 5. 2.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

Microsoft에 대한 분할명령 취소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은 2001년 6월 28일 서면법 제1조, 2조 위반과 관련된 Microsoft 사건에 대해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 일부 취소, 일부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항소법원에서 지방법원이 내린 Microsoft 분할 명령을 기각함에 따라 법무부, 주정부와 MS 간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 항소법원이 사업자 상호간의 공동행위 등을 통한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을 옹호해 왔다는 점에서 MS에 대해서도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해 왔다.

MS는 이미 1998년 윈도우95 장착 PC에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지 못하도록 한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법 판사의 예비명령을 항소심에서 번복시킨 바 있다. 특히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선거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고, 이전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와는 달리 소송보다는 법정외 화해를 주장해온 점에서 잭슨 판사의 1심 분할명령에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왔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 6월 7일에 연방지방법원은 Microsoft의 서면법 제1조와 2조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MS에 대

해 컴퓨터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자사를 2개 회사로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미 법무부 및 17개 주정부가 MS사의 향후 독점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 제안한 분할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Microsoft사는 동사를 운영체제사업(operating systems business)과 응용소프트웨어사업(an applications business)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만 했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MS는 PC와 휴대형 컴퓨터, TV 셋톱박스 등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부품만 유지하고 워드, 오피스, 익스플로러 등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을 독립시켜 별도 회사를 설립해야만 한다. 그 외 연방지방법원의 시정명령은 Microsoft의 그 밖의 행위제한을 포함하였는데, 윈도우 O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PC제조회사에 압력을 넣어 다른 MS제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MS는 항소심에서 연방법원의 법적 결론과 그 결과인 시정명령 모두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MS는 3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3가지 종류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법적 결정을 부인하고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수많은 절차적·사실적 근거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둘째, MS는 지방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증거심을 자신들에게 부여하지 않았고, 그 시정명령의 실제적 조항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MS는 1심 법원의 법관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소송 당사자 일방에 유리한 접촉을 했고,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동안 부적절하게 소송 본 안에 대해 공식적인 해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MS는 이러한 윤리적 위반이 연방지방법원에서 편파적인 판단을 하도록 했고, 따라서 당해 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부적격하며 그에 따른 사실판단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1심에서 제출된 증언, 당사자의 제출서류 및 증언 등 상당량의 지방법원의 사실판단에 대한 기록을 살핀 후에 MS의 주장 일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 중 MS가 운영체제시장에서 반경쟁적 수단을 통해 독점을 유지하려고 하여 서면법 제2조에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일부는 확정하고 일부는 취소하였다. 특히 7명의 법관들은 개인용 PC 운영체제시장에서 MS가 자사의 windows 소프트웨어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일부 영업행위가 독점의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행해졌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에 동의했다.

한편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MS가 불법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을 시도하여 서면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하였다. 이 사항에 대해 MS는 몇 개 주에서 상거래와 관련하여 독점화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방 서면법 제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측이 ① 피고가 약탈적인 행위 혹은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② 독점화에 대한 특정의도가 존재하며, ③ 독점력을 획득할 위험가

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항소법원도 이들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실시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장래의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할 위험 가능성”에 대한 원고측의 입증 실패를 인정하여 독점화 시도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MS의 행위가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원고들은 MS의 개인용 PC 운영체제시장에서의 독점이 이와 별개인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독점화 추정을 위한 추정적 증거라 주장을 했었고 지방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법무부를 포함한 원고들은 독점의 유지와 별개인 ‘시장에서의 독점화 시도’라는 별도로 분리되는 문제를 똑같은 범주 안의 주장으로 제기하고 연방지방법원 역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른 시장에서 독점력 획득의 위험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확정과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항소법원은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측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한다고 항소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또한 MS가 불법적으로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자사의 운영체제인

Windows에 탑재하여 끼워팔기를 함으로써 서면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항소법원은 본 건 끼워 팔기에 대해서는 당원위법이 아닌 합리성의 원칙에 의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여 구체적인 재심사를 다시 1심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시정명령에 대한 MS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방지방법원의 최종결정은 항소법원이 앞에서 실시한 바에 따라 인정될 수 없는 책임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고 따라서 이들에 근거한 시정명령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항소법원은 실령 그들이 연방지방법원의 책임판단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명령을 취소시키고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연방지방법원이 특정 사실 분쟁에 대한 시정명령을 구하기 위한 증거심의 절차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1심 법관이 일부 언론인들과 비밀 인터뷰를 하므로써 허용될 수 없는 일반 당사자에게 편파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접촉을 하였고 법정 밖의 공식적인 진술을 통해 MS사에게 많은 공격적인 언급을 행하여 편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비록 그들이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법관의 행위는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소송진행에 손상을 주었고 판결 절차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

들었다고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시정명령에 대한 최종결정을 무효화시키고 시정명령의 재고려를 위해 파기 환송하고 환송시 이 사건을 다른 1심 법관이 맡아서 재심하도록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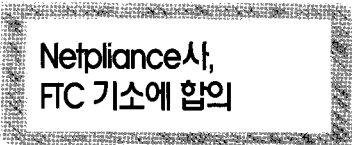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 승인, 일부 취소, 일부 파기의 판단을 하였고 시정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완전 무효화하고 그 사건을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절차를 진행할 원심법원의 다른 법관에게 환송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 이후, 독점금지법 전문가들은 MS 사건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정부와 MS사가 이징표가 될 만한 독점금지사건을 종결짓도록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항소법원의 결정은 논란이 되었던 법률적 논점과 MS의 즉각적인 분할 위험을 제거하므로써 법원 밖에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독점금지법 전문 변호사들과 전직 정부관료들은 평가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 후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이 MS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단 항소법원의 의견을 검토한 뒤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MS에 약간 유리한 것으로 보이나 소송을 공동 제기한 법무부와 19개 주 주정부가 완전히 패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독점금지법 전문가들은 항소법원

이 MS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상당부분 인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MS가 계속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새로운 판사가 다시 진행하게 될 1심 환송 사건에서 MS에 대한 회사 분할명령이 다시 판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항소법원 판사들 전원이 1심 사건을 담당했던 잭슨 판사의 판결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이 결정적인 분할 명령 취소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재심에서 어떠한 법적 판단을 받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2001. 6. 28. 로이터 통신



**Netpliance사,
FTC 기소에 합의**

인터넷과 e-mail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를 개인용 PC보다 저렴한 장비로 선전해 온 판매업자가 자신의 판매와 선전행위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FTC의 기소혐의를 인정했다. Texas주 Austin에 본사를 둔 Netpliance사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와 불공정한 선전, 부실표시에 대한 연방법과 기타 우편통신판매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Netpliance는 "i-opener"란 명칭의 인터넷 접속 장비를 제공하고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왔다. FTC와 이 회사 사이의 합의안은 i-opener 혹은 다른 인터넷 온라인 접

속 상품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계약내용과 조건, 제한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하게 부과된 금액을 배상하고, 민사적 징벌로써 십만 달러를 지불하며, 장래에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FTC에 따르면 Netpliance는 자사 상품에 "당신의 친구들에게 인터넷을!,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i-opener를 개봉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인터넷에 완벽한 접속... 199달러, 복잡한 컴퓨터를 배울 필요가 없음, 접속전의 지체가 전혀 없이 인터넷이 이제 199달러만으로 편리한 당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FTC는 Netpliance가 i-opener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달의 인터넷 사용료, 장거리 전화 비용 등과 같은 부대비용을 적절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들을 기만적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기소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소비자들이 자사의 장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만일 Netpliance가 장래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면 소비자들은 i-opener를 가지고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FTC는 밝혔다.

FTC 기소장에 따르면 i-opener 광고는 이 장비가 인터넷 접속능력과 관련하여 개인용 컴퓨터에 상응하는 능력을 보유하여 모든 인터넷 오락물과

정보에 대한 접속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i-opener 광고는 "인터넷에 대한 완벽한 접속, 가장 값비싼 가정용 컴퓨터 시스템도 당신에게 i-opener의 간편함과 작은 크기, 편리한 특성들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소내용에서는 이러한 광고들은 기만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i-opener 사용자들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는 없었다. i-opener 사용자들에게 접속이 불가능한 몇몇 인터넷 사이트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형식과 프로그램 언어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파일들, 예를 들어 온라인 오락물들과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웹사이트,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에 소비자들은 웹페이지를 볼 수 없거나 e-mail에 첨부된 파일을 볼 수 없었고, 온라인 상으로 음악을 들을 수도 없었다.

또한 FTC는 이 회사의 요금청구 행위 중 일부를 사기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기소하고 있다. 먼저 이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소비자들이 i-opener를 받은 날짜에 근거하여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들 소비자들은 i-opener를 주문할 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까지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에 대한 요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둘째, 이 회사는 다시 동일한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용카드나 외상카드에 수 개월 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하였다. FTC와의 합의안에서 이 회사는 이들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을 환불할 것을 동의하였다.

그 밖에도 FTC는 이 회사에게 우편 통신판매규정의 위반혐의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매점이 약정된 기간 안에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송부하도록 하고 만일 약정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문자의 주문 후 30일 안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약속한 바대로 상품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에게 바뀐 송부일자를 통보하고 구매자가 그 연장에 동의하거나 혹은 그 주문을 취소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합의안에서 그들의 송부 절차를 변경하고 장래에 이와 같은 규정의 위반이 재발하지 않을 것과 민사적 과징금으로 십만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FTC는, 연방법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업체가 소비자에게 부과한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6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Netpliance사가 소비자들이 부과된 서비스요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30일 안에 하여야 한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부실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장에 이 혐의를 포함시키고 있다.

FTC는 기소장과 제안된 합의안을 법무부에 송부하는데 5:0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기소장과 합의안은 법무부에 의해 2001년 6월 27일 미국 Texas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송부되어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합의는 동 사안의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피고가 법률위반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이 합의안은 법원에 의해 승인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2001. 7. 2. 미 연방거래위원회

E U

유럽의회, 적대적 기업 인수 관련 법안 부결

유럽의회가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기업인수에 대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유로권 내에서 기업인수에 관한 법제의 국가적 상이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1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유럽의회에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273대 273의 표결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고 말았다.

이 법안이 부결된 중요한 이유는 다수의 독일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주주의 의사를 묻도록 한 조항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작년에 영국의 이동전화 회사인 Vodafone사가 자신의 경쟁사인 독일의 Mannesmann을 인수할 때, 적대적 기업인수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 법안의 제정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가는 영국이었다.

브뤼셀에 소재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관리는 앞으로 한동안은 이 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럽차원의 보다 큰 이익이 어떤 사소한 이익에 의해 추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일은 유감스럽다"고 15

개 EU 회원국을 통한, 단일시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Frits Bolkestein은 말했다.

현재 유럽법은 유럽 회사의 책임자들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들이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상 Poison Pills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에는 적대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를 막기 위해 우호적인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산의 중요 부분을 매각토록 하는 일들이 포함된다. 주주들은 적대적 인수의 경우에 그들의 주식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익을 유지한다.

"유럽이 기업인수에 관한 조화된 법률을 가질 기회를 잃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Peter Montagnon은 말했다. 그는 영국 보험업협회 투자분과위 최고 책임자이며, 이 협회의 회원사들은 전세계에 총 1조 6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하여 유럽산업이 보다 강하고 경쟁적이 되기를 바랬으나, 비효율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능력 없는 관리자들은 계속해서 보호장벽의 뒤에 숨어 있고자 한다"고 Montagnon은 덧붙였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이끈 독일 의회의 Klaus Lehne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만족함을 표시했다. 그는 "이는 잘못된 법안이므로 이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부결시키는 편이 낫다. 또한 이 법안은 국경을 넘는 투자가 발생할 여지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이 법안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른바 '특별주(Golden Shares)'와 같은 여타 보호주의적 수단들과 함께 저지되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특별주 제도란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매우 특별한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사항으로는 회사매각이나 주요자산 처분 등 아주 특수한 경우로 한정해 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일부 정부들은 사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인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특별주 제도가 있으나 독일은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주로 유럽의회내 이태리와 스페인 출신 의원들이었다. 이 두 국가들은 예전에 에너지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전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 목표물이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기업이 다른 국가의 공기업에 의해 인수되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자유화라고 할 수 없다. 프랑스전력은 사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수해 왔다. 또한 프랑스전력의 최근 이러한 행태가 많은 이태리와 스페인 출신 의원들로 하여금 이 법안에 반대하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독일의 자동차제조회사인 폭스바겐사 역시 그동안 반대 로비를 펼쳐왔다"고 Lehne는 말했다.

2001. 7. 5.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EU, GE와 하니웰 합병 불허기로

유럽연합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하니웰 인터내셔널 인수를 불허기로 결정했다. 미국 기업간 인수·합병 사건에 EU 경쟁당국이 독자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를 가진 뒤 발표된 성명을 통해, "EU는 GE의 하니웰 인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GE와 하니웰의 합병은 항공우주산업의 경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특히 항공분야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인수·합병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410억 달러에 달하는 GE의 하니웰 인수 건에 대한 EU의 불허 결정은 예견된 것이었다. GE와 하니웰측이 양사의 합병으로 항공엔진 및 항공전자분야의 독과점 지위가 초래될 것이라는 EU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20명으로 구성된 EU 집행위원회는 회의 시작 1시간만에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GE의 하니웰 인수가 실패한 것은 잭 웰치 회장이 이번 사태를 잘못 판단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그는 유럽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에 밀려 결국은 인수를 허용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래서 마리오 몬티 위원이 요구한 양보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써 하니웰 인수를 실패하고 말았다.

GE측은 EU의 불허결정에 불복하고, 합병조건을 수정해 EU에 새로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EU의 합병 불허결정으로 이번 합병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수건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에 유럽은 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해서, 양자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미국은 기업인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하므로, 인수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면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유럽은 기업인수가 경쟁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하므로, 비록 인수를 통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인수로 인해 시장 내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유럽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에 대해 엄격한데,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GE와 항공기전자공학 회사인 하니웰의 결합인 이번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GE의 하니웰 인수 실패는 다국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법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EU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EU간 관계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합병에 실패한 하니웰의 최고경영자가 경질되고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후유증도 심각하다. 한편, GE를 대신해서 하니웰을 인수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치열한 로비전도 시작됐다.

미국과 유럽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인 경우 자국뿐만 아니라 역외 지역 경쟁 및 경쟁당국에도 신고,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세계교역 추세에 따라 EU 집행위와 미 법무부에 상호 심사를 요청해 왔다. 지난 97년 미국 내 기업인 보잉과 맥도널·더글러스 합병건 때도 EU측에 신고한 뒤 어렵게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 EU의 GE와 하니웰 합병 불허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 상원의원, 통상 담당 고위관계자 등도 잇따라 EU가 이번 합병을 불허할 경우 심각한 무역분쟁 및 보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3일 미 상원의 제이 록펠러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향후 유럽 기업의 합병을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이번 무산이 미국 해외판매 법인법, 호르몬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에어버스 슈퍼점보기 제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논쟁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EU와 미국간 통상 관계에 긴장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GE측은 3일 성명을 발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단히 실망했다. 우리는 GE의 제트엔진 제조 부문과 하니웰의 항공기전자, 금융 등이 연계될 경우 유럽 항공기 시장의 가격 상승 등이 우려된다는 EU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잭 웰치 GE 회장은 "양 회사의 사원 수천명은 지난 8개월 동안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번의 EU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

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EU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정 투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GE측이 법정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영이 탄탄한 GE와는 달리 하니웰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부진한 사업부문을 정리할 기회를 상실하는 바람에 경영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하니웰은 이사회에서 합병 결렬 책임을 물어 마이클 본시놀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퇴진시켰으며, 향후 십여 개 이상으로 분할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는 하니웰의 신용 등급을 하향조정,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평가했다. 관측통들은 GE에 앞서 하니웰 인수를 추진한 헬리콥터와 제트엔진 및 엘리베이터 생산업체인 유니이티드 테크놀로지가 GE를 대신하는 유력한 상대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2001. 7. 3. Washington Post,
7. 4. New York Times

독 일

생콘크리트 회사에 대한 최초의 카르텔심사 종료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생콘크리트회사 및 이의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절차를 종결하였다.

베를린, Lower Saxony주 남동

부, Saxony-Anhalt주 일부 및 Chemnitz에서 수년에 걸쳐 위법한 할당협정에 관여하였다 하여 약 3억 7,000만 마르크의 과징금이 69개사 및 51명의 경영관리자에게 부과되었다. 이 업계의 주요 기업은 모두 관계되어 있다. 이제까지 58개사의 과징금 절차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11개사의 과징금 결정에 대하여 상소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연방카르텔청은 Düsseldorf 고등검찰청에 절차를 이관할 것이다.

「경쟁자 및 소비자를 해하고, 최후에는 경제 전체에 매우 유해한 것이 되는 카르텔 전쟁은 카르텔청의 가장 주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연방카르텔청은 적발율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수단으로써 Leniency Program(면책제도)을 도입하였다. 최초로 연방카르텔청에 당해 카르텔에 대해 보고하고, 이의 해명에 공헌한 자는 과징금으로부터 전면적으로 면제된다. 결국, 그 누구도 우리가 카르텔을 적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Böge 연방카르텔청 장관은 말했다.

연방카르텔청은 현재, 생콘크리트 지주분야에 있어 할당 및 가격카르텔 협정의 혐의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서부 독일, Thuringia 및 Saxony에 주로 관계된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방책을 발전시켜 카르텔에 대한 협력적인 대처를 행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공동체 경쟁당국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Böge장관은 말했다.

2001. 5. 9. 연방카르텔청 발표